

* 이 회칙은 2006년 4월 10일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 통과된 내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학생회칙

<전문>¹⁾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별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00월 00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진리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의 발전과 회원들의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힘쓰며,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의 하나됨을 통하여,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과 조국의 통일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중인 자는 제외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와 문서, 책자 및 기타 매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회장단, 중

1) 전문은 총학생회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우리 대학의 역사를 밝히며 학생회칙을 제정, 선포하는 부분이다. 회칙 제정시의 이념을 그대로 살리고자 전문에 포함된 '과학기술대학'은 수정하지 않는다.

양집행국, 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생활협동조합 건설준비위원회, 과학생회, 1학년 반대표자 협의회로 구성된다.

제6조(준비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준비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제 2 장 전체학생총회

제7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권한)

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소집)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²⁾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1조(지위)³⁾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2조(구성)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준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과학생회장, 반대표자 협의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단, 과학생회가 없을 경우 과대표 1인이 권한대행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일학년의 경우 의장단을 제외한 반대표자를 중 호선된 4인⁴⁾이 대표권을 위임받아 참석할 수 있다. 또 중앙집행국 국장단은 회의에 참석하여 대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13조(의장단) 전학대회 의장단은 총학생회장단이 겸임한다.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업무)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2) 전체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의 형식을 따로 되고 일반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비상시 전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한편으로 과반수 참석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과반수 참석조항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타학교 회칙에는 과반수 참석 조항을 없애거나, 비상학생총회라는 것을 따로이 둡니다. 여기에서 과반수 참석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은 민주주의 원칙적 충면과 실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하여 학생총회의 성립을 결정하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3) 전체학생총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대표자들이 모여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게 됩니다.

4) 1학년 반체계의 경우 과와는 달리 그 구성원들이 한시적인데다가, 각 반장들 모두가 참가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4인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에 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대한 사항.
4.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개정의 건의에 관한 사항.
5. 중앙운영위 산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
6. 기타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5조(소집)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하다고 의장이 판단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7조(지위)⁵⁾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제18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성평등위원장, 전학대회에서 임명한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중앙집행국 국장단과 총학생회장단이 구성한 특별기구 기구장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개진권을 가진다.

제19조(의장) 총학생회장단이 중앙운영위원회의장단을 겸임한다.

제20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제반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3.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5.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총학생회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제23조(지위)

5)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경우 전체 학생회 사업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총학생회장단과 자치단체회장단이 보다 자주 모여 실무를 책임지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국의 의장의 되며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총학생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보장한다.

제24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⁶⁾.

제25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전체학생총회에서 단책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6조(권한대행)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중앙집행국 각 국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
- 중앙집행국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구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국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주관한다.
-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 6 장 중앙집행국

제28조(지위) 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29조(구성)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국장과 특별기구 기구장들로 구성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국⁷⁾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각 부서 및 기구는 예산편성서, 활동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에 제출한다.
- 중앙집행국 각 국장 및 기구장은 전학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제 7 장 학생복지위원회

제31조(지위)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학내 모든 복지시설과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본회의 특별위원회이다.

제32조(위원장) 자체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은 전학대회, 중앙운영위

6) 현 총학생회장단은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과 협의아래 이월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현 총학생회장단의 유고 및 사고 등-를 대비하여 현 총학생회장단은 모든 권한을 신임 총학생회장단과 협의 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식적인 임기는 다음해 2월 말까지이나, 사전에 그 임기를 임시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중앙집행국은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행국의 구성이 통상적으로 총학생회의 교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국 전체의 임무와 역할만을 명시하고 각 국의 구성과 역할은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집행국은 각 국별 부서와 중앙집행국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원회의 위원이 되며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학복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복위는 본회의 회원과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34조(해임) 전학대회에서 해임권한을 가지며 의결을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임건의를 발의한다.

제35조(회칙) 자주적이고 수월한 복지사업 진행을 위해 학생복지위원회는 본 학부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제 8장 동아리연합회

제36조(지위)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학내의 등록된 동아리들의 대표기구이다.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37조(구성)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38조(회장단) 동연의 회장단은 동아리 회원들 중에서 각 동아리 대표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은 동연을 대표하며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9조(업무 및 권한) 동연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동아리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연의 회칙에 따른다.

제 9장 성평등위원회

제40조(지위) 성평등위원회는 학내의 성평등을 이뤄내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본회의 특별위원회이다.

제41조(위원장) 자체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은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업무 및 권한) 성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내의 성평등을 해결해나간다.
2.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43조(해임) 전학대회에서 해임권한을 가지며 의결한다.

제 10장 과학생회

제44조(지위) 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학생기구이다.

제45조(구성) 각 과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제46조(회장단) 회원들 중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과를 대표하고, 과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위원이 된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각 학과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48조(가집행체계8) 과학생회가 없는 경우, 각 학년의 대표자들이 가집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 11장 반대표자협의회

제49조(지위) 반대표자협의회(이하 반대협)는 본회 1학년들의 대표기구입니다.

제50조(구성) 각 반의 반장들과 그 반원들로 구성된다.

제51조(의장단) 반대협의장단은 반장들중에서 호선하며 반대협의장단은 반대협을 대표하며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52조(업무 및 권한) 반대협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1학년들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대협의 회칙에 따른다.

제 12장 재정

제53(경비)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학생회비의 징수 및 보관은 중앙집행국에서 담당한다.

제54(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55(회비) 학생회비는 중앙집행국에서 편성, 책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심의하고,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6(예산) 중앙집행국은 해당학기 개시일까지 예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안 확정전의 예산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가집행 할 수 있다.

제57(결산) 중앙집행국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전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13장 선거

제58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일반 민주주의 선거원칙인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9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하기 등록을 필한자만 선거권을 가진다.

제60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들은 각 단체에서 마련한 선거시행세칙의 피선거권 자격이 주어진 이들에 한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1. 선거권을 가진자로 4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8) 가집행체계는 현재 우리 학교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생회가 없는 과는 3학년 과대표를 중심으로 가집행체계를 꾸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선거권을 가진자로 3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

제61(선거시기) 총학생회장단의 선거는 임시년도 전년 11월중에 실시하며, 중앙운영위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선거방법) 총학생회장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2인1조로 전체회원 1/2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입후보 할 수 있다.
- 본 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한다.
- 과반수의 투표가 안되거나 단일후보로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가 안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63조(당선무효)

-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후 24시간이내에 당해 중앙운영위에 제소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재적인인 2/3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당선이 취소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64조(후보 최종 미등록) 재선거시,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도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해당 1년간의 학생회 체계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 논의한 후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5조(당선공고)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20일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 중앙선관위는 전학대회 위원들 중 중앙운영위에서 추천한 5-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중앙선관위는 당해연도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그외 각 기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각 기구 회칙에 따른다.

제67조(보궐선거)

-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위되거나 학생총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기간이 250일 이상일 겨우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단 잔임기간이 2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후 궐위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전학대회 의장의 궐위시에는 위원들 중에서 재호선한다.
- 기타 의장의 궐위시에는 각 기구의 회칙에 준한다.

제68조(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9조(공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 1/20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이상의 발의

제70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 20일이내에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72조(공포 및 발효)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고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